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아래사항 미만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델하우스 2016.11.15. 개장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준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12. 22 (목요일)입니다. (무주택기간 : 1.4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당첨자별 청약금은 입주자모집공고 다음으로 한도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민영주택으로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분양권 세대원 전체소유를 원칙으로 제3자에 당첨자를 전매하는 행위가 제한적 적용됩니다. 단, 분양 시점까지 주택소유를 모두 처분하여 당첨자를 전매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016.12.22 ~ 2017.12.21 까지 1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016. 12. 22 까지 사업주체(시행사)가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을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을 공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당 주택의 취득 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할 권리의 취득을 무효로 하고 공급한 주택을 환수하며 환수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